

BUS931 Advanced International Logistic Management Theory (Doctor)

제 4주차 리포트

과 목: 국제물류론

교수명: 정 성 태 교수님

코드:

과 정 : 박사과정 3학기

학생명: 김 경 민

[국제무역계약과 수출,입 절차]

- 1. 무역이론과 무역계약
- 1-1) 무역이론의 발전과정
- ▶ 무역발생:
- 지역간 자연적, 사회적 조건의 차이로 생산재와 소비재 상호교환의 필요성
- 지역간 생산비와 장소에 따른 가치의 차이에 의해 재화의 이동이 발생
- ▶ 재화, 용역, 자본, 정보는 가치가 낮은 곳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물리적 이동은 물류기능으로 비용절감, 관세는 재정수익 목적.

'무역과 물류활동은 실과 바늘 관계'

- ▶ 아담스미스 '절대우위론' (고전무역이론)
- 어떤 재화의 자연가격(장기생산비용)이 절대적으로 저렴한 국가로부터 수입함으로써 생산요소를 절약할 수 있고 경제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함.
- 절대생산비설: 상품의 절대생산비용이 싼 국가에서 비싼 국가로 상품이 이동함으로써 생산자, 소비자, 세계경제 전체에 보다 효율적이 자원배분이 이루어 지고, 이에 따라 무역으로부터 무역이익이 발생한다는 것.
 - (단, 자유무역에 의하여 큰 시장이 존재하면 규모의 경제 -생산성향상 이점도 발생함.)
- ▶ 리카르도 '비교우위 이론'(고전무역이론)
- 절대생산비용 차이 없어도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
- 영국은 의류, 포도주 절대생산비용이 모두 크지만, 상대적 생산비용을 보면 영국은 의류의 상대적 가격(83%)이 프랑스(112%)보다 저렴, 의류생산비 는 비교우위

_

- 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재화의 생산에 특화하여 교환하면 양국 모두 이익이 됨.
 - > 1단위 소비- 무역 없음: 영국은 220, 프랑스는 17단위 노동 필요
 - > 2단위 생산- 무역을 하면 영국: 의류 200,

프랑스: 포도주 160 노동만 사용

(양국 모두 생산요소 절약이라는 무역이익 발생)

재 화	영국	프랑스	국가별 비교
의 류 생산비용	100	90	(프) 절대생산비용 우위
포도주 생산비용	120	80	0: 0
의류/포도주 비교	83%	112%	영국 의류 생산비용- 상대적 비교우위

- ▶ 헥셔-올린 '요소비율이론' (근대무역이론)
- 자본(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나라는 자본(노동)을 집약적으로 투입하여 생산하는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게 됨.
- 자국이 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재화를 중점적으로 생산하여 수출하고 그 대가로 다른 재화를 수입하여 무역으로 경제 전체에 이익발생.
- 리카르도의 노동생산성 비교우위 외에 양국의 요소 부존자원의 차이로 비교 우위 결정.

Ex) 미국: 자본이 풍부하면 자본집약재 수출

중국: 노동력이 풍부 노동집약재 수출하면,

- -> 미국에서는 자본수요가 증가하여 자본가격 상승, 노동가격은 하락
- -> 중국에서는 노동수요가 증가하여 노동가격인 임금이 상승하고 자본가격은 하락.
- 즉, 양국이 무역을 하면 양국 생산요소 가격은 서로간에 균등화 된다.
- ▶ 헥셔-올린 이론 한계점: 요소부족량이 비슷하여 비교생산비 차이가 없고 수요구조, 소득구조가 서로 비슷한 선진공업국간의 무역패턴을 설명 X

▶ 혀대 무역이론 :

■ 현대 무역이론:

- 1. 대표 수요설: 선진공업국간의 공산품 교역에 대한 설명으로 수출품 등장이전에 국내에 상당한 수요가 발생하여 대량생산이 되어야 규모의 경제로 생산비절감, 품질차별화가 이루어져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에도 수요가 유 발되어 수출이 가능해 진다는 이론 (1961.S.B. Linder)
- 2. R&D 이론: 국제경쟁력 비교우위로서 천연자원, 노동숙련도, 자본, 규모의경제, 연구 개발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연구개발요소로 이는 국가간 비교생산비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기술혁신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경쟁력이 높고 수출 비중이 크다는 것(R.Vernon & D.B.Keesing)
- 기술격차론: 기술선진국이 기술모방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기술격차가 해소될 때 까지 계속된다고 보고기술격차가 해소되면 무역이 중단된다고 보는 이론 (M.V.Posner)
- 4. 제품수명주기이론: 도입기에는 신제품을 후진국에 수출하고, 성장기는 대량생산, 규모의 경제, 가격하락으로 경쟁심해져 저개발국으로 수출은 증대, 성숙기는 제품, 가격표준화로 선진국 수출감소, 쇠퇴기는 선진국이 개도국 상품 수입국이 된다고 보는 이론. (R.Vernon & L.T.Wells)

上記 이론들은 재화의 국가간 교역중심이론이나-오늘날은 자본, 노동, 기술 이동과 금융서비스, 기술 서비스, 지적소유권 분야의 국가간 교역이 중요시되고, 각국의 경제정책은 타국에 큰 영향을 마친다.

1-2) 무역과 물류의 관계

- ▶ 물류의 비효율성은 재화의 원가를 높이고 국제시장에서 제품, 기업에 대한 신뢰성과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 <u>적기에 인도 못하거나, 포장, 하역 등의 잘못으로</u> 운송클레임이 발생하면 수출업자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 ▶ 경쟁사보다 빠르고 값싼 운송수단, 최적의 운송경로 선택,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물류비용 절감에 의하여 가격경쟁력 을 높여야 한다. <u>운임의 하락은 수출입을 직접</u> 촉진시키므로 국제운임, 거래비용은 관세나 환율같이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
- ▶ 높은 품질, 저렴한 물류비용은 국가경쟁력과도 연관성을 갖기에 운송, 보관, 하역, 정보관리와 같은 경쟁력 있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무역경쟁력을 잃는다.
- ▶규모의 경제로 무역과 운송 촉진정책은 물류서비스 가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 <u>물류센터거점, 보관기능, 재고수준 의사결정은 수출입물류에서 중요한 변수</u>이며,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완성품 을 지연하는 지연(Postponement)전략의 중요성 증대함.

1-3) 무역계약의 개념과 특성

- ▶ 무역계약(Trade Contract)의 개념 :
- 협의의 개념은 매도인 또는 수출업자가 매수인 또는 수입업자에게 물품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 정하는 물품매매계약이다.
- 광의의 무역계약은 무역거래 대상이 물품 이외 기술, 용역거래, 금융 및 자본거래, 해외건설, 플랜트 수출 등으로 확대되어 국제간의 모든 계약을 통칭.

▶ 무역계약의 특성: 무역계약은 일반 당사자의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쌍무계약 (수출자: 무품 인도의무, 수입자: 인수 후 대금 지급의무) 쌍방이 상호 대가적 관계에서 급부가 있는 유상계약 그 밖에 계약체결에 어떠한 방식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라는 4가지 특 성을 가지고 있다.

1-4) 무역계약의 성립단계

	1. 해외 시장조사 및 거래처 선정	
	2. 거래의 권유	
매도인	3. 조회 (거래조회, 신용조회)	매수인
(Seller)	4. 조회 회신	(Buyer)
	5. 청 약 (offer)	
청약자	6. 반대 청약 (counter offer)	피청약자
(offeror)	7. 승 낙 (Acceptance)	(offeree)
i i	8. 계약서 작성	
		,

1-5) 무역계약의 청약

- ◆ 청약(Offer)의 개념: 청약자(Offeror)가 자기의 상품 또는 구매할 상품에 대한 조건들을 거래 상대방(피청약자: offeree)에게 제의, 신청하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명시적 의사표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물품 매도확약으로 표현함.
- ◆ 청약서의 기재내용: 청약서에 기재할 내용으로는 영문 통신문의 일반적인 기재사항 이외에 ③ 상품명(commodity), ⑤ 규격(grade or specification), ⑥ 수량 (quantity), ⑥ 단가(unit price), ⑥ 선적사항(shipment), ⑥ 포장 및 화인 방법 (shipping mark), ⑥ 대금 결제방법(payment condition), ⑥ 보험(insurance), ⑥ 유효기간(validity) 그리고 청약자와 피청약자의 주소와 이름이 기재된다.

◆청약의 종류:

오퍼에는 기한(유효기간)의 확정성 유무에 따라 **확정청약 (Firm Offer)**, **불확정청약(Free Offer)**, **반대청약(counter offer)**, **단서가 따르는 조건부청약(Conditional Offer)**으로 구분한다.

▶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유효기간 내에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 상대방이 청약을 거절하거나 반대청약, 철회, 승낙기간 만료경우 그 효력은 소멸된다.

- ▶ 무역계약의 Conditional Offer (조건부 오퍼)
- 이 오퍼는 Free Offer(불확정 청약)에 일정한 단서가 붙은 오퍼로서 다음과 같은 형식이 있다.
- ① <u>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final confirmation)</u>: 피청약자의 승낙의 도달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다시 청약자의 최종 확인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함.
- ② 재고잔유 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청약자가 발행한 청약의 내용에 대상 물품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경우에 유효한 청약을 말한다.
- ③ 선착순판매 조건부 청약(Subject to prior sale): 오퍼에 대하여 승낙의 도달순서에 한정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 ④ <u>시황 조건부 청약</u>: 오퍼의 제시가격이 미확정된 청약으로 시세 변동에 따라 피청약자에게 사전 통고 없이 변경될 수 있는 청약이다.
- ⑤ 점검매매 조건부 청약(Offer on approval): 청약과 함께 현품 견본을 보내어 피청약자가 물품을 점검해 보고 구매의사가 있으면 그 대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품해도 좋다는 내용의 청약이다(대금지급이 곧 승낙의 의사표시).
- ⑥ <u>반품허용 조건부 청약(Offer on sale or return)</u>: 청약과 함께 대량의 물품을 보내어 피청약자가 위탁판매하게 하고 잔여 물품은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의 오퍼이다.

1-6) 무역계약의 승낙

▶ 승낙 (Acceptance):

청약을 받은 피청약자가 청약을 수리하고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의사표시.

▶ 승낙의 요건 :

- 경상의 원칙 :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완전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 청약내용에 대하여 무조건적, 절대적, 최종적 동의 하는 방식.
-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내에 통보한다.
- 청약의 상대방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한다.
- => 조건부 동의는 반대청약이 되며, 이를 승낙으로 보지않고 상대방의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함.

▶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 :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서는 승낙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승낙을 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청약의 경우에도 같다.

- 우편, 전자식 승낙 : 유효기간내에 의사표시 발신 때부터 효력발생함.
- 전화, 팩스에 의한 승냑 : 도달하는 때부터 효력발생함.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과 INCOTERMS 2010 구조

2-1) 품질조건

-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은 품질, 수량, 가격, 선적, 결제, 보험, 포장, 클레임조건

품질조건: (공산품은 선적할 때 상태-선적품질 / 곡물, 육류는 수입한 하역시 양력품질조건)

- ① 견품매매(Sales by sample):
 - 매매당사자가 제시한 견품과 동일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도록 약정거래조건
- ② 상표매매(Sales by trade mark): 상표(trade mark)나 브랜드명(brand name)을 품질결정 기준
- ③ 규격매매(Sales by type)
 - 국제적 통일된 규격에 의하여 품질을 결정하는 매매방식, 공식규격, ISO규격
- ④ 점검매매: 매수인이 현품의 품질수준을 직접 확인 후 거래(점검매매 조건부, 반품허용 조건부)
- ⑤ 명세서 매매(Sales by specification): 고가의 물품이나 기계류 같이 특수한 물품은 견품을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세서를 기준으로 거래하게 된다.
- ⑥ 표준품 매매: 농산물 같이 계절의 표준품의 품질을 기초로 약정 물품의 품질을 결정한다.
 - ③ 평균중등 품질조건(Fair Average Quality ; FAQ) : 주로 농산물에 사용되는 품질조건으로, 생산지역에 따라 그 품질이 다르므로, 공인기관이 설정한 해당 연도의 평균 중등의 등급을 받은 물품으로 거래하는 방식. (곡물류, 과일의 선물매매).
 - © 판매적격 품질조건(Good Merchantable Quality; GMQ): 견품 또는 표준품을 정하기 곤란한 목재나 냉동어류 등의 물품에 주로 사용, 인도하게 될 물품이 판매하기에 적합한 물품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방법.
 - © 보통품질조건(Usual Standard Quality: USQ): 주로 원사 거래에 이용되는 품질조건으로 공인 검사기관의 공인표준기준에 의하여 보통 품질을 표준품으로 결정하는 조건이다.

2-2) 수량조건

수량조건:

수량단위는 중량(weight), 용적(measurement), 개수(piece), 길이(length), 면적(aquare), 포장(package)단위로 함.

산화물(bulk cargo) 경우 5%의 과부족은 허용하는 조건이다.

- ▶ 영국 long ton(L/T)은 1,016kg(2,240파운드),
 - 미국 short ton(S/T)은 907kg,(2,000 lbs),
 - 프랑스 1 metric ton(M/T) 은 1,000kg.(2204파운드)
- -운임계산시 1용적톤은 1CBM (목재 cubic meter, cubic, feet) = 166kg = 1m³ -액체는 barrel, gallon, liter.
 - 곡물은 bushel로 표시. 100ft³ (1,000/353m³) = 2.832m³
 - 연필, 양말은 dozen(12개) 값싼 잡제품은 small gross(12X10=120)
- 1) 수량결정시기: 선적수량조건(선적지 인도조건), 양륙수량조건(도착지 인도조건)
- 2) 수량 검증방법: 검사기관, 공인검량업자가 발행하는 용적중량증명서로 입증한다.

총중량 = 외포장 + 내포장 + 내부충전물

순중량 = 총중량 - 외포장무게 제외-보편적으로 많이 사용

정미중량 = 물품내용만의 중량(내포장,충전물제외)로션병제외(원료)

2-3) 가격조건

무역정형거래조건(Trade Terme / Incoterms)

- ▶ 무역정형거래조건(Incoterms)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 Trade Terms 은 매매가격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격조건의 역할도 하지만, 매도인의 물품인도방법을 규정하고 위험의 이전, 비용의 부담, 운송계약, 보험계약의 체결의무, 각 당사자가 제공해야 하는 서류 등을 규정함으로써 매매당사자의 의무를 명시한 인도조건의 역할을 한다.
- INCOTERMS 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무역분쟁예방, 해석차이로 인한 불확실성 최소화 목적으로 1936년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무역화경변화에 대응하여 수차례 개정을 거처 INCOTERMS 2010으로 변모되어 왔다.

(국제규칙이지 조약은 아님-강제력은 없다)

- ▶ FOB조건 원가(수출가격):
- 생산원가(제조원가, 수출포장비, 물품 검사비, 수출허가 등 제세공과금, 통신비 및 잡비)
- 운송비(국내운송비, 국내운송보험료, 선적비용, 부두사용료, 창고료, 수출통관비, 검수 검량비)
- 금융비용(금리, 은행수수료)
- 예상이익(수출경우 CIF 39.4%, FOB조건 38.5% 점유)
 - > CFR 조건 원가 = FOB원가 + 해상 운송비 추가
 - > CIF 조건 원가 = FOB원가 + 해상 보험료 추가

2-4) INCOTERMS 2010 의 구조

▶ 특징:

EU와 같이 관세 없는 경제권의 확대, 물품안전, 실무적 반영

- DAT, DAP 신설: 매도인이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 단일/ 복수(운송방식 불문조건) 및 해상/내수로 운송(해상운송 전용조건) 2 조건으로 구분함.
- FOB, CFR, CIF 조건에서 인도시점의 선측난간(ship's rall) 삭제되고
- > 본선에 적재(" on board" the vessel) 된 때에 인도되는 것으로 변경함.

단일/ 복수의 운송방식을 위한	EXW	Ex Works (named place) : 공장 인도조건
	FCA	Free Carrier (named place) ; 운송인 인도조건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CIP	(Carriage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DAT	(Delivered at Terminal) ; 터미널 인도조건-2010 신설
	DAP	(Delivered at Place) : 목적지 인도조건-2010 신설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 지급 인도조건
해상 및 내수로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축 인도조건
운송에 사용 되는 해상운송 전용조건	FOB	(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
	CFR	(Cost and Freight) ; 운임 포함 인도조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2-5) INCOTERMS 2010 의 주요내용

	247	위 조건	위함 이전	배용마찬	=12
	EXW	공장 인도조건	매도인이 작업자 구내에서 매수인 의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 인도하였을 때.	위험이전까지 제비 용 매도인부담	수출,수입 통관승인- 매수인의무
단일/ 복수 운송	FCA	운송인 인도조건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인도한 때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조건 (운송 방식 불문 조건)	CPT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약정된 일정/기간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보관하에 또는 후속운송인 있을 경우-최초운송인 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은 FCA조건 +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운송비 복합운송비부담	
	CIP	운송비 보험료 지급 조건		매도인은 CPT조건 + 지정목적지까지 적하보험료	* **
	DAT	터미널 인도조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 로 지정목적항/목적지의 지정터미 널에서 매수인 처분하에 놓이는 때	위험이전까지 제비 용 매도인무담	
	DAP	목적지 인도조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된운송수단에 실린채양하준비가 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	(#) #)	* *

			위험이전	마용이전	明显
	DDP	관세지급 인도조건	약정된 일자/기간내에 매도인 이 지정된 수입국내 목적지점 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이전까지 제비용 매 도인부담(관세포함)	수출,수입 통관승인 -매도인의무
F. 해상/ 내수로 운송	FAS	선축 인도조건	지정선적항 부두/부선으로 본선 선측에 인도하였을 때.	위험이전까지 제비용 매 도인부담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조건 (해상	FOB	본선 인도조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적재 한 때	W W	M 44
(예성 운송 전용 조건)	CFR	운임 포함 인도조건	и п	매도인은 적재까지 제비 용+ 목적항까지운임 +정기선 양하비부담	* *
	CIF	운임,보 험료포함 인도조건	* *	매도인은 적재까지 제비 용+ 목적항까지운임,보험 료+정기선 양하비부담	

▶ INVOTERMS 2010 실무상의 유의점 :

(임의규칙으로 당사잔간의 합의가 우선함.)

- 1. "FCA Busan CY Incoterms 2010" 적용의 문구를 삽입하여 정확성 필요.
- 2. 적절한 조건 선택이 중요: 복합운송, 항공운송으로 신속성 필요시 FOB, CFR, CIF가 아니라 운동방식 불문조건인 FCA, CPT, CIP를 사용
- 3. 물품의 인도장소, 위험이전장소가 되는 지정장소, 항구, 목적지, 목적항 구체적으로 명시필요.

2-6) 선적조건:

선적조건은 인도시기, 인도장소, 인도방법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선적은 계약물품을 선적항의 지정선박에 적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복합운송이 이루어지고, 신용장상에 복합운송서류를 요구할 경우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 선적시기 결정: 특정월 선적, 조기선적, 조건부 선적, 분할선적, 환적 불가항력조항-매도인의 여건으로 통제 불가능한 제여건 고려함.
- ▶ 해상선하증권: 선하증권의 발행일, 본선 적재일이 선적일 기준이 됨.
- ▶ 복합운송증권: 발송일, 수탁일, 본선 적재일이 선적일자가 된다.
- ▶ 항공운송서류: 발행일, 운송서류에 명시된 발송일, 발행일이 기준.

2-7) 결제조건.

송금방식, 추심방식, 신용장 방식 여부 우선 결정 후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을 선택.

- ▶ 선지급은 주문시 지급조건으로 송금식 방식에 의해 은행환 어음,우편환, 전신환 등으로 선적전, 물품 인도 전에 매도인에게 송금함.
- ▶ 동시지급은 현물 또는 현물과 동일시 되는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선적시 지급성격으로 선적서류상환도조건(CAD: Cash Against Document), 일랍불 신용장방식, 지급도 방식
- ▶ 선적후 지급: 물품상환 인도조건(COD: Cash On Delivery)으로 기한부 신용장 방식, 화환어음추심방식의 인수인도조건(D/A)
- 화환 신용장방식: 수익자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되는 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업자 개설은행이 지급을 책임 진다는 것.
- 2) 화환어음 추심방식
- ◆ 지급도조건(D/P: Document against Payment): 추심은행이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제시하면 즉시 어음금액을 지급해야만, 선적서류를 인도 해주는 조건 (일람불환어음 발행)-수입상에게 유리한 조건
- ◆ 인수도조건(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어음을 인수하고 선적서류를 인수받는 조건 (기한부어음—usance bill발행-일정기간이지난후 어음만기일에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

2-8) 보험조건.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Chamber Commerce) A,B,C 3종류 신해상보험증권 기준,영국로이즈포럼,런던보험자협회의 (청색-적화용,백색-선박용) 회사용 보험증권양식-우리나라 많이 사용

1) 전손 담보조건 (TLO: Total Loss Only):

침몰, 화재 등 보험목적물이 전부 손상된 경우에 보험금 지급

- 2) 단독 해손부담조건(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TLO보다 넓게인정되나 악천후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손상된 경우에 단독해손은 보상하지 않음.
- 3) 분손 담보조건(WA: With Average): 보험목적물이 부분적으로 손상된 경우에 공동, 단독해손도 보상(단, 특약으로 제한함) WA3%-손실액이 3% 미만 경우 보상 않음.
- 4) 전위험 담보조건(AR: All Risks)-보험료 가장 고율: 보험회사의 면책위험의 손해가 아니면 모든 손해를 보상해준다. 파업, 폭동 및 화물 고유의 하자,수송지연 손상비용은 제외
- 5) FOB, CFR 조건 수출경우, 매수인이 보험 부보를 명시하고 있다. 특약에 의해 담보되는 부가위험, 확장담보조건, 전쟁위험, 동맹파업위험 등을 담보해주는 부가위험 보험조건과 연장담보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함.

2-9) 포잘/ 클레임조건

변질, 손상, 멸실 등을 방지하고 포장외장에 특정기호와 번호, 목적지 등 화인 (shipping mark)을 명확히 기재함.-수출포장은 가볍고, 부피가 적고, 튼튼하고, 값싸고, 보기 좋은 것으로 하되 상품의 종류, 성징 및 도착지와 운송도중의 기후와 환적횟수, 도착국가의 법규, 상관습, 포장비, 운임 등을 충분히 고려

- 1) 개별 낱포장 : 물품보전, 다지인 목적 등
- 2) 내포장 : 수분, 습기, 녹방지, 광선, 진동에 의한 손상 방지
- 3) 외포장: 파손, 변질,도난,분실 방지-목재, 판지상자, 드럼사용
- 4) 화인: 운송관계자나 수입업자가 물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포장의 외장에 기호, 번호 등으로 계약 물품을 표시하는데 이를 통틀어 화인(Shipping Mark)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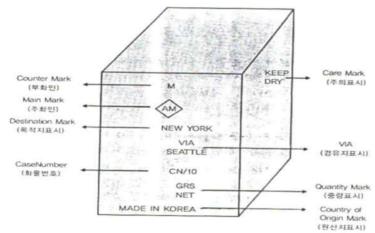
클레임조건:

분쟁 예방(타협,화해)-조정-상사중재-국제사법소송 클레임의 근거, 정당성을 입증하는 공인감정인의 검사서 첨부

2-10) 화인(Shipping Mark, Cargo Mark) 표시 내용

- ⑦ 주화인(Main Mark): 보통 외장명에 삼각형.다이아몬드형.정방형.마름모형. 타원형 등의 표시를 하고 그 안에 삼호의 약자를 써 넣음.
- 부화인(Counter Mark): 주화인의 보조로서 타 화물과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표시하는 것으로 부화인이 내용물의 품질/등급을 표시할 경우에는 품질표시가 됨.
- © **중량표시(Weight Mark)** : 화물의 순중량과 총중량을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용적도 표시
- ② 목적항 표시(Port Mark): 목적항 또는 목적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CHICAGO OVERLAND VIA SEATTLE'과 같이 경유지 까지 표시하는 경우도 있음.
- ① 번호(Case Number): 포장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매 포장마다 총 개수 중에서 몇 번째 개수에 해당하는지를 일련번호로 표시함.
- @ 원산지표시(Country of Origin Mark): 'MADE IN KOREA'처럼 해당 화물의 생산국가의 원산지표시
- ② 주의표시(Caution Mark, Care Mark): 화물의 운송 또는 보관시에 취급상의 주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인데, 이는 보통 포장의 측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Side Mark라고도 함.

2-11) Carton Box 화인 표시 내용 영역



2-12) 화물취급 주의표시

TYE	깨지는 것(FRAGILE): 깨지기 쉬 우므로 주의하여 취급할 것을 표시	찍힘주의	"찍힘주의" 표시
	취급주의(HANDLE WITH CARE): 충격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레 취 급할 것을 표시		"밟지 마시오" 표시
	갈 고 리 금 저 (USE NO HOOKS/DO NOT PUNCTURE): 갈고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표시	ĴĸŴ	온 도 제 한 (TEMPERATURE LIMITATIONS): 허용되는 온도 범위 또는 최저 최고온도를 표시
<u>11</u> ↑↑	위(THIS WAY UP): 화물의 올바 른 윗방향을 표시하여 반대 가로 쌓기를 하지 않을 것을 표시, 포 장화물의 옆면 또는 끝 면의 위쪽 구석에 가까운 다른 면의 2곳 이 상에 표시	•	젖음 방지(KEEP DRY): 물이 새 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표시

2-12) 화물취급 주의표시

** \$\$	직사일광 열차폐 (PROTECT FROM HEAT): 직사일광 및 열로 부터 차폐하는 것을 표시	무게 중심 위치 (CENTER OF GRAVITY): 화물의 무게중심 위 치를 표시. 표지는 표시보기와 같이 무게중심의 위치가 쉽게 보 이도록 필요한 면에 표시
**	방사원 방호 (PROTECT FROMRADIOACTIVE SOURCES): 방사원에서 격리 또 는 방사선을 방지하는 것을 표시	불안정 (UNSTABLE): 쓰러지기 쉬운 화물임을 표시
<u>X</u> X	화기 엄금(KEEP AWAY FROM FIRE): 타기 쉬우므로 화기를 접 근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표시	굴립 금지 (DO NOT ROLL): 굴 려서는 안됨을 표시

2-13) 무역분쟁 클레임 해결방법

- 1. 당사자 간 해결 :
 - 청구권 포기(Waiver of Claim) 화해와 타협 등 우의적 해결방법
- 2.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 ③ 알선(Intermediation): 공정한 제3기관의 조언에 양당사자 합의하면 분쟁이 해결됨
- © 조정(Mediation): 조정인(Mediator) 해결안(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해결함.수락 여부는 구속성이 없으므로 양당사자 모두의 무조건적 수락을 통해서 조정은 이루어진다.
- ◎ 중재(Arbitration) : 공정한 제3자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판정에 복종함으로써 해결함.
- ② 소송(Litigation): 소송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소송의 경우, 법원의 판결 효력이 상대국까지 미치는지 문제와 판결의 강제집행문제, 시간.비용. 인력면에서 낭비 등을 고려해 볼 때 될 수 있으면 상사중재가 바림직하다. (대한상사중재원-단심제 사법적 효력)
- 3. 소송과 중재의 차이점: 소송은 상대편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소 가능, 중재는 계약당사자의 중재에 관한 합의가 필요, 사후합의도 유효함. 소송은 2심.3심 에 항소.상고가 가능 중재는 단심제, 소송은 분쟁해결에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 중재는 분쟁이 신속, 경제적으로 해결가능, 소송은 공권력에 의한 해결, 중재는 공정한 제3자(중재인)에 의한 사적 분쟁해결. 소송은 원칙적으로 공개리에 진행되어 비밀 유지가 불가능,중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므로 비밀 유지가 가능함.
- 3. 수출, 수입 절차와 통관절차
- 3-1) 수출, 수입 절차 개념
- ▶ 수출절차 개념 : 수출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자가 수출이 허용된 물품을 외국의 수입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 무품의 수출에 관한 기본사항을 관리하는 대외무역법과 수출대금의 결제방법을 정한 외국환관리법에따라 수출 승인을 받은 후 통관 절차 등을 규정 한 관세법에 따른 세관통관 절차를 거쳐 선박 등에 적재하고 최종적으로 물품대금을 회수하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행정적, 법규적, 상관습적 흐름의 단계.

▶ 수입절차 개념 : 수입상이 수출상과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입계약서인 물품 매도확약서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받고 외국환은행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후 수입화물과 선적서류가 신용장개설은행에 내도 되면 수입화물을 통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3-2) 수출 단계별 절차

- ▶ 수출계약체결: 국제적 매매계약으로 수출업자는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 수입업자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
- ▶ 수출신용장 수취: 수출계약내용과 대조, 취소불능여부, 양도가능여부, 분할선적, 환적금지-기타조건 확인.
- ▶ 수출승인신고: 산업통상부로부터 수출제한품목/수출자동승인품목 인지를확인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 ▶ 수출 물품의 확보: 원자재 확보, 수입신용장, 국내신용장, 수출금융, 원자재수입자금, 생산잡화 자금 준비
- ▶ 수출검사: 제품의 제조과정 또는 완제품에 대해 제품과 재료의 품질 및 포장상태를 검사
- ▶ 국제운송계약: FOB- 수입자 지정 선사.

 CIF/ CFR 수출자 선정한 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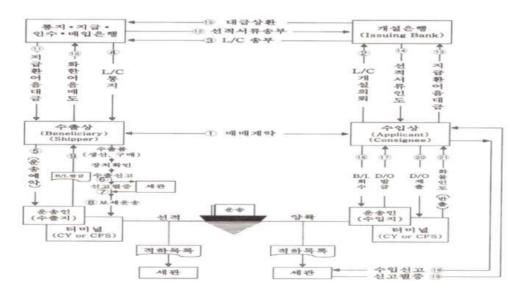
 해상보험(적하보험)증권 확인.
- ▶ 수출통관(세관):
- 수출물품 보세구역 반입 / 장치신고 및 확인
- 수출신고/ 세관검사/ 수출면장교부
- ▶ 선적 및 환어음 매입
- 보세구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반출
- 선복확보를 통해 해상운송계약이 체결
- 원산지증명 =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발급
- 본선에 적재 (본선수취증 선하증권 확인)

- ▶ 수출대금 회수: 신용장방식의 수출 및 D/A(추심전 지급인도조건)
 D/P(기한부어음 발행 후-인수인도조건)의 경우 수출허가의
 유효 기간내에 수출대금 전액을 회수
- ▶ 관세환급: 수출용 원재료 수입하여 수출제품사품 경우 징수한 관세 환급.
- ▶ 클레임 처리

3-3) 수입 단계별 절차

- 1) 수입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외국의 수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교환한 후 이때 수입업자는 그 물품이 국내의 수입허가 또는 승인에 문제가 없는 지를 확인
- 2) 수입 승인: 수입자동승인 품목은 자유화-승인 제외함. 대외무역법상의 수입자격 확인 (산업통상부).약사법, 마약,식품위생법 등 특별법 규제를 받는 품목 경우 주무관서에 사전 하가
- 3) 수입신용장 발행 및 통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입신용장(L/C) 개설. 수입업체 개설은행이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조건부 지급.인수를 하기로 약정하거나 타은행에서 지급.인수.매입 하도록 수권하는 증서로 신용장(L/C) 발행 후 수출업체에 신용장 번호, 금액, 선적기일, 유효 기일 등 통지 후 기일내 선적을 요구함.
- 3) 수입 어음 결제 및 도착서류 수렴 수출업자 발행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운송서류 도착통지 운송서류 인수받은 수입업자는 하역계약 체결 신용장 일치여부 검토 수입대금 결제 후 선적서류 인도받아 수입통관
- 4) <u>수입 통관</u>: 수입물품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 제출-물품검사 -관세납부-수입신고필증 발급 받음.
- 5) 수입물품의 인수: 보세구역으로 부터 반출함.

3-4) 수출+수입 단계별 절차



3-5) 신용장 거래의 특징

- ◆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발행)은행이 신용 장이 요구하는 조건에 일치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인 수출업자에게 대금지급을 해주겠다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 ① 독립성의 원칙(UCP 제4조): 신용장은 매매계약 등의 근거로 개설되나 일단 개설 되면 매매계약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거래로 간주한다.
- ② 추상성의 원칙(UCP 제5조): 신용장거래는 상품, 용역, 의무이행 등의 거래가 아니라 서류거래이고 L/C상의 조건을 서류로 증명하면 대금의 지급 여부를 판단.
- ③ 완전 정확성의 원칙: 신용장 개설을 위한 지시, 신용장 그 자체, 신용장에 대한 여하한 조건변경 지시 및 조건변경 그 자체는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
- ④ 엄격일치의 원칙: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서류를 심사한다는 원칙이다.
- ⑤ 은행면책의 원칙 : 은행이 신용장 거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인하고 신용장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면책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 ①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UCP 제34조)
 - © 서류전달에 대한 면책(UCP 제35조)
 - © 불가항력(UCP 제36조)
 - @ 피지시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UCP 제37조)

3-6) 일반 수출 통관 절차

- 1. 수출신고: 관세사,화주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수출승인서 기초로 수출신고서 작성- 신고통관시스템 신고번호 부여된 때 부터 신고시점효력발생. <mark>원칙적으로</mark> 무역자동화시스템(KT-NET)의 EDI방식 무서류 (P/L: PaperLess) 신고. 수출품 제조전에도 신고 가능 (대부분 관세사, 통관법인에 위탁 처리)
- 2. 수출심사 : 전송화면상의 신고자료를 신고서작성요령 적합성여부 심사 (대외무역법 조건)
- 3. 세관검사 : 수출신고된 물품과 동일여부 검사(Cargo Selectivity통관시스템 선별검 사)불법, 위장수출방지, 관세환급 정확성 목적. (현품검사대상은 별도 검사)
- 4. 수출신고수리 : 검사대상, 서류제출대상 외 물품은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수리 자동수리대상이 아닌 물품중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세관직원이 심사-즉시수리, 우범화물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출물품 실제적 검사후 수리.
- 5. 수출신고필증 교부 및 보세구역 반입
- 6. 수출품 선적준비 : 보세구역에서 반출신고 후 반출함-수출신고필증, 적화목록 제출 제시하면 수출통관 시스템상 선적이 기록됨. (수출신고수리일 부터 30일 이내 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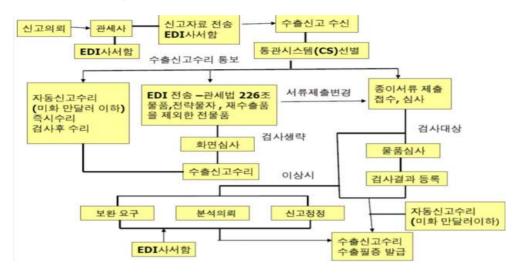
▶수출신고기간:

수출계약 체결 → 신용장 내도 → 수출품 확보 → 선적지 운송 (선적스케줄 확정) → 선적 → 출항 (선적스케줄 확정 후 선적 이전 30일 이내 수출신고)

3-7) 일반 수입 통관 절차

- ▶ 수입통관은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수입물품은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다음 관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겠다는 과정으로 <mark>외국물품을 내</mark> 물품화하는 행정행위이다.
- 1. 입항: 외국무역선(기) 입항후 선장(기장)은 세관장에게 입항보고, 적화목록 제출.
 2. 하역: 선박회사는 Master B/L단위의 적화 목록을 기준으로 <mark>하선신고서</mark>를 세관에 게 EDI로 제출.(액체는 특수저장시설, 살화물은 부두내, 컨테이너 화물은 부두밖의 CY 가능)보세구역운영인은 운송업자가 발행한 House B/L 단위로 세관장에 EDI로 물품 반입신고, 하역 후 적화목록과 대조하여 선박회사, 검수업자, 하역업자 공동으로 물품 검수
- 3. 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입 예정정보와 대조확인 후 House
- 3. 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입 예정정보와 대조확인 후 House B/L 단위로 반입 신고서 제출 (C/T단위는 Master B/L단위로 신고함.)
 4. 보세운송: 세관장의 관리지정 보세구역, 특허 보세구역(보세창고, 공장, 건설장, 전시장, 판매장), 2개 이상의 기능수행 종합보세구역(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공동집배송단지, 유통단지) 보세운송: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보세상태 국내운송
 5. 수입신고: 물품 수입한 화주, 관세사(법인) 명의로 EDI로 세관장에 신고, 통관심사, 물품 검사 출항전, 입항전 (C/T화물 FCL은 신고제한), 보세구역 도착전,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6. 수입신고수리: 검사후 수리-(수입신고 전 반출, 즉시 반출 가능) 수입자는 관세납부(사후 납부제)
 7. 반출 8. 반송통관 (수주문취소 등으로 입신고전에 외국으로 되돌림.)

3-8) EDI 수출통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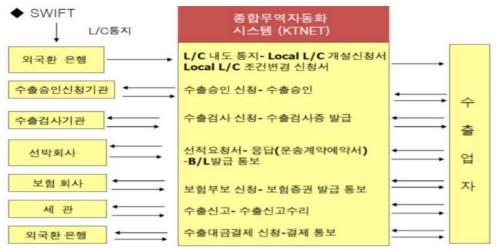


3-9) EDI 이용 수출, 수입 업무

구분	주요 업무		
수출입/행정	수출입 승인 업무, 구매승인서 발급 업무수출검사 신청 업무		
외환/금융	- 신용장 개설 및 통지 업무 - 내국 신용장 개설 및 매입 업무 - 수출환 어음 매입요청 및 사후관리 업무 - 외화 자금 이체 업무(EFT)		
통관/관세	- 수출입 신고 및 신고수리 업무 - 보세구역 반출입 및 보세운송 업무 - 화물 선별 업무(Cargo Selectivity), 관세환급 업무		
운송/물류	선적요청(S/R) 및 선하증권(B/L)발행 통지 업무선사, 세관, 항만청, 터미널, 화주간 화물정보 교환 업무선적 및 하역 업무		
보험	- 보험청약 업무, 보험증권 발행 통지 업무		

- ▶ CDM(Customs Data Model)2.0 : 세계관세기구(WCO)의 통관데이터 국제표준모델로 통관화물과 선박 입출항보고 신고항목 추가됨(2006년)
 - 국제무역에 공헌

3-10) 국제은행간 지급결제 통신망(SWIFT) 수출업무 처리 흐름도



◆ SWIFT (Society for World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국제은행간 지급결제 통신망으로 은행간 자료 및 자금 결제 등을 EDI 방식으로 교환하는 네트워크 시스템.